

#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 : 2021. 4. 8.

위원정수 : 7명

재직위원 : 7명

1. 일 시 : 2021. 4.15.(목) 15:00~16:00

2. 장 소 : 본 대학 205호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손화희(위원장, 교원), 서광적(교원), 유상기(직원),  
고유리(총학생회 회장), 이혜지(총학생회 부회장),  
김수정(대의원회 의장), 이동철(회계사) 이상 7명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안 건 : 가.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 
결산(안) 심의·의결  
나.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 심의



### 6. 회의내용 :

-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제31조 제③항 1. 「대학교육기관 :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야 한다.」에 따라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설명하고 참석하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.

-위원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위원들에게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결산(안)을 부의하고, 총무처 경리과장이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에 대한 보고서 및 각종 자료를 설명하다.

-위원들은 제출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다.

-이동철위원이 일반용역비의 증가 이유를 묻자, 경리과장은 일반용역비의 차세대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비가 증가되었다고 말하다.

-유상기위원은 유형고정자산현황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지 묻자, 총무처

경리과장이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.

-이동철위원은 비등록금회계의 단기수강료가 증가한 이유를 묻자, 경리과장은 평생교육원의 2020학년도에 수강생을 증원하여 단기수강료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답하다

-검토를 마친 위원들은 의견을 나누고 유상기위원이 동의하고, 고유리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
-위원장은 위원들에게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결산(안)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위원장은 다음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을 부의하다.

-위원장은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최 안내 문자 및 대학 홈페이지 공지를 회의 전에 하고 있으며, 회의록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으나,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표기되어있지 않아 개정(안)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.

-서광적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전 공지와 회의록 공개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규정 개정에 동의하자. 이해지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두 위원이 찬성하다.

-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2021. 4. 15.

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위원장 손 화 희 (인)

위 원 서 광 적 (인)

유상기 (인)

고유리 (인)

이혜지 (인)

김수정 (인)

이동철 (인)

010  
000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